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 29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9. 2. 10
- 다. 상 정 일 자 : '99. 2. 10(제7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 나. 개정사유
  - 지방세법 개정안이 '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세 일반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20조(세율)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 "개인"을 "개인세율"로하고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표준세율"로 하고 제2호 "법인"을 "법인의표준세율"로 개정
  - 제36조(과표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씨씨당 세율변경
  - 제37조(납기와 징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지방세법의 개정('99. 1. 1시행) 내용에 따라 화순군세 조례를 개정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의 배기량에 의한 씨씨당 세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800씨씨 이하에서부터 3,500씨씨 초과까지」로 세분화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율을 「800씨씨 이하에서 2,000씨씨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 납세자의 신고납부 납기 시기와 방법도 연간 4회로 확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한 조치라 생각됨.
-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 "개인"을 "개인의세율"로 하고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표준세율"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 "법인"을 "법인의표준세율"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항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영	업 용
베 기 량	씨 씨 당 세 액
800씨씨이하	80원
1,0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40원
2,000씨씨이하	200원
2,000씨씨초과	220원

3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③ (일반적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이 조례는 2000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④ (적용례) 제20조, 제36조 제1항제1호, 제37조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개인</u></p> <p>가. 군내에 주소를 둔 <u>개인</u> : 1,000원</p> <p>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u>개인</u> : 50,000원</p> <p>2. <u>법인</u></p>	<p>제20조(세율) ① - - - - -</p> <p>- - - - -</p> <p>1. <u>개인의세율</u></p> <p>가. - - - <u>개인의세율</u> : - - - - -</p> <p>나. - - - <u>개인의표준세율</u> : - - -</p> <p>2. <u>법인의표준세율</u></p>
<p>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p>	<p>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p>
<p>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u></p>	<p>제37조(납기와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u></p>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신설)</p>	<p>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li> <li>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li> <li>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li> </ol>